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2. 14 선고 2017가단61424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명

담당변호사 박동인, 최윤희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이현직

3. D

4. E

5. F

변론 종결 2018. 11. 9.

판결 선고 2018. 12. 14.

주 문

1.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가. F, D은 연대하여 142,074,417원 및 그 중 95,810,000원에 대하여,나. E, C은 연대하여 17,790,407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다. D, C은 연대하여 38,733,149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라. E, F은 연대하여 1,969,782,176원 및 그 중 1,485,400,256원에 대하여 각 2016. 1. 1.부터 2017. 10. 1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값는 날까지 연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 C은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12. 2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7. 11. 2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D, E, F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 C, D, E, F이 부담한다.

4. 제2, 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B, F, D은 연대하여 142,074,417원 및 그 중 95,810,000원에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 C은 연대하여 17,790,407원 및 그 중 13,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D, C은 연대하여 38,733,149원 및 그 중 3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 E, F은 연대하여 1,969,782,176원 및 그 중 1,485,400,256원에대하여 각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주식회사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12. 23.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법인에 대한 파산절차가 파산종결, 파산폐지 등으로 종료되면 그 법인 소유의 적극재산이 남아 있어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인의 법인격은 소멸한다(대법원 1989. 11. 24. 선고 89다카2483 판결 참조).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2012. 12. 18. 인천지방법원 2012하합11호로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절차가 진행되었으나, 2015. 9. 7. 위 법원으로부터 비용부족으로 인한 파산폐지결정을 받고 위 결정이 확정되어 2016. 1. 25. 법인등기부가 폐쇄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회사의 잔존 적극재산에 관하여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 회사는 파산절차가 종료됨으로 인하여 그 법인격이 소멸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근거

피고 D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E, F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E과 연대하여 제2번하자보증계약에 따른 구상금 17,790,407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13,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과 연대하여 제3번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38,733,149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32,000,000원에 대하여, 각 확정지연손해금산정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0.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피고 C은 원고에게 보험계약내역표 중 제8번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12. 23.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11. 20.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자신이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한 후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피고 C에서 피고 F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연대보증인을 피고 C에서 피고 F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나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G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연대보증인을 피고 C에서 피고 F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C,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김영희

청구원인

1.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아래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각 피보험자들과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 하자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약, 하자이행보험보증보험을 체결하였다.

보험계약내역표

번호	보증종류	피보험자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연대보증인	서증
1	계약	H(주)	483,685,891원	2010. 4. 23. ~ 2012. 8. 30.	1. F 2. D	갑1
2	하자	I(주)	179,111,892원	2011. 3. 1. ~ 2014. 2. 28.	1. E 2. C	갑2
3	하자	(주)J	109,000,000원	2009. 10. 1. ~ 2012. 9. 30.	1. D 2. C	갑3
4	계약	K(주)	498,300,000	2011. 9. 21. ~ 2013. 12. 30.	1. E 2. F	갑4
5	계약	L(주)	US 577,000.00	2011. 11. 15. ~ 2015. 4. 15.		갑5
6	하자	M(주)	60,795,930	2011. 10. 1. ~ 2014. 9. 30.		갑6
7	선금급	L(주)	US 577,000.00	2011. 11. 29. ~ 2015. 4. 15.		갑7
8	하자	(주)N	222,733,500원	2010. 12. 14. ~ 2013. 12. 13.	C	갑8

2. 위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 대하여, 피고 E, D, C, F 은 위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중 연대보증인란과 같이 위 각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B이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3. 보증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보증채권자들은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채무불이행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알리고 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별지 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및 지급금액표 기재와 같이 위 보험계약내역표 중 제1 내지 7번의 보증 보험계약의 보증채권자들에게 보증금액 합계 1,626,710,256원을 지급하였다.

4.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변상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가 정한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연 15%, 2016. 1. 1. 이후는 연 12%인바, 2015. 12. 31.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541,669,893원이다.

5.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F, D은 연대하여 제1번계약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42,074,417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95,810,000원에 대하여, 피고 E, C은 연대하여 제2번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17,790,407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13,500,000원에 대하여, 피고 D, C은 연대하여 제3번하자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38,733,149원 및 그 중 지급보험금 32,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E, F은 연대하여 제4, 5번계약보증 보험계약, 제6번하자보증보험계약, 제7번선급금보증보험계약에 따른 구상금 합계 1,969,782,176원 및 그 중 각 지급보험금 합계 1,485,400,256원에 대하여 각 확정지연 손해금 산정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7. 10. 11.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또한 피고 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위 보험계약내역표 중 제8번 하자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N에 2012. 9. 24. 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렇다면 원고에게, 보험계약내역표 기재 중 제8번하자보증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C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지급보험금 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 다음날인 2012. 9. 25.부터 2012. 10. 24.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2. 12. 23.까지는 같은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5. 12. 31.까지는 같은 연 15%,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같은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보증보험 보험가입내용 및 지급금액표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구분
보증계약자	보증보험	보증보험자	보증보험종류	계약내용	보증내용	보증가입금액	보증기간	보증금지급일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지급보험금	합계	잔액
1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485,885,881	2018.09.21- 2022.09.30	2022.09.31	95,888,888	48,184,413	143,894,427		
2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179,111,893	2015.09.01- 2018.08.31	2015.09.30	9,888,888	1,385,456	12,888,456		
3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308,000,000	2009.10.01- 2012.09.30	2012.09.30	52,000,000	6,751,149	38,751,149		
4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488,346,000	2011.09.21- 2015.12.31	2012.09.30	281,305,000	141,597,122	433,897,122		
5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USD 571,000,000	2013.11.15- 2015.08.31	2015.08.31	894,721,988	144,578,988	895,303,988		
6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68,795,830	2013.10.01- 2014.09.30	2013.09.30	3,888,000	1,387,476	1,387,476		
7			보증보험	보증보험	보증보험	USD 571,000,000	2013.11.15- 2015.08.31	2014.09.30	535,378,198	96,926,140	612,304,338		
합계										1,485,403,216	484,281,820	1,969,782,176	
잔액										1,426,716,254	541,683,853	2,188,399,149	